

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1/1

심의일자	2018.4.25.(수)		
사업명/신청위치	영등포 1-13 재개발지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/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32-8		
의결번호	2018-소3-1	심의결과	조건부 본위원회 상정
[심의 내용] 경관+건축분야 자문			
■ 기 심의시 지적사항 및 소위원회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하시기 바랍니다.			
< 건축계획분야 >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공개공지의 계획 및 디자인은 공공에 개방되는 적극적인 공간으로 개선 바람.○ 공개공지, 공공보행통로는 공공적 성격이지만 단지 다른 외부공간 등은 입주주민만의 사적영역 분위기의 공간 등도 조성될 수 있도록 조경식재 등 계획 검토 바람.○ 태양광 패널 설치시 경관 및 주동 입면계획과 어울릴 수 있도록 위치 선정 및 파라펫 계획 등을 검토 바람.○ 고층 주동 옥상조경은 관리가 용이하도록 검토 바람.○ 지하철로 인한 진동문제 등을 고려 주동의 거리를 좀 더 이격되도록 검토 바람.○ 비상차량 동선을 고려하여 어린이놀이터 등 안전대책 검토 바람.○ 105동 주동 평면계획에서 승강기실 옆 침실은 소음 및 진동 피해가 예상되므로 승강기와 계단 위치 조정을 검토 바람.○ 어린이집의 통풍과 채광의 개선을 위하여 공용홀의 오픈 부분을 확대 등 공간을 적극적으로 계획바람.○ 연도형상가는 서비스 공간에 연결되는 통로 또는 외부에 캐노피 설치 등을 검토 편의성을 증진하기 바람.○ 남측 차량출입구 진출입 동선계획(바닥 진출입) 표시 수정 바람.			
< 구조분야 >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102동, 103동 사이 동간 간격이 2개동의 벽면 수압 면적과의 차이가 커서 풍속이 크게 증가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검토 바람.○ 태양광 발전 판넬을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, 구조체 및 판넬 자체의 박리등에 대한 안전조치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도면에 명기하기 바람.○ 방진매트 등 면진 방진조치를 반영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기 바람.○ 전이기둥, 전이보에 적용하는 특별상세의 구체적인 설명과 추후 반영되도록 도면에 명기 바람.○ 건축물의 높이를 고려하여 비틀림 강성 등 검토사항에 대하여 명기하기 바람. 끝.			

2018. 4. 25.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